군민의 눈높이로 새롭게 도약하는 더 큰 함안

함 안 군

수신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경유)
제목 중소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홍보 협조요청

1. 평소 군정 발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과태료 규정의 단계적 시행에 대비하고, 관내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회원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조사는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연구로, 법 위반 여부 점검이나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조사결과는 개별사업장이나 응답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종합 분석 형태로 활용됩니다.

<중소사업장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조사>

- **조사기간: 2026. 11. 2.(월) ~ 11. 13.(금)**
- **조사대상: 관내 제조업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조사내용: 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현황, 현장 애로 등**
- **조사수행: (사)한국안전진흥협회(경상국립대학교 주관)**
- **참여방법: 설문 주소(외솔.한국/함안)**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
 또는 QR코드 접속하여 온라인 설문 응답
- **참여혜택: 설문 응답자에 모바일 상품권 제공(5,000원 상당)**
- **문 의 처: (사)한국안전진흥협회 양성원 연구원(☎ 010-3670-6296)**

※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 단계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 50인 이상 2027. 1. 1.부터 / 50인 미만 2028. 1. 1.부터

위반내용	과태료(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위험성 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붙임 1. 실태조사 안내문 1부.
2. 위험성평가 안내자료(산업안전포털 게시자료) 1부. 끝.

함 안 군 수

주무관 최한솔 중대재해예방담당 이화경 안전총괄과장 전결 2026. 10. 27. 강원중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31830 (2026. 10. 28.) 접수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 http://www.haman.go.kr

전화번호 055-580-4023 팩스번호 055-580-2759 / chhs2510@korea.kr / 비공개(6)

타인의 정보는 알려지지않게, 내 정보는 유출되지 않게!